각위

아사히 카세이 주식회사

선전시 쉬란전자 등에 대한 중국 특허권 침해 소송의 종심 판결에 대하여 ~리튬 이온 이차 전지용 세퍼레이터에 관한 특허권 침해 소송~

아사히 카세이 주식회사(본사: 도쿄토 치요다쿠, 사장: 코보리 히데키, 이하 「당사」)는 중국 선전시의 리튬 이온 이차 전지용 세퍼레이터 판매 회사인 선전시 쉬란(旭冉)전자 유한공사 및 선전시 쉬란(旭然)전자 유한공사(이하, ※쉬란전자 등)를 공동 피고로 하여, 2018 년 8 월에 당사가 보유한 리튬 이온 이차 전지용 세퍼레이터에 관한 중국 특허권(특허 제 ZL200680046997.8 호)에 근거하여, 쉬란전자 등이 판매하는 『단층 W-scope』 전지용 세퍼레이터 제품에 대한 중국에서의 판매 금지와 손해 배상(합계 인민위안 100만위안)을 요구하며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에 제소하였습니다.

2020 년 4 월에는 상기 특허권 침해에 대한 당사 주장을 인정하는 1 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만, 쉬란전자 등은 이에 불복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에 상소하였습니다.

이번에 2020년 12월 2일자로 상기 특허권 침해에 대한 당사 주장이 전면적으로 인정되어,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에서 상기 제품의 판매 금지 및 손해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종심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당사는 앞으로도 지적 재산을 중시하고,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.

※더블유스코프 주식회사(본사: 도쿄토 시나가와쿠)의 중국에서의 판매 대리점

## 【과거의 관련 프레스릴리스·알림】

「선전시 쉬란전자 유한공사 등에 대한 특허침해소송 제기에 관하여」(2018 년 8 월 20

일)

https://www.asahi-kasei.com/news/2018/e180820.html

「선전시 쉬란전자 등에 대한 중국 특허권 침해 소송의 판결에 관하여」(2020년 5월 11일)

https://www.asahi-kasei.com/jp/news/2020/ip4ep30000000x69-att/el200511 1.pdf

「더블유스코프 주식회사 등에 대한 특허침해소송 제기에 관하여」(2020년 2월 4일) https://www.asahi-kasei.com/jp/news/2019/pdf/el200204 1.pdf

「더블유스코프 주식회사 등에 대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 관한 당사 한국 특허의 유지 심결에 대하여」(2020년 12월 23일)

https://www.asahi-kasei.com/jp/news/2020/ip4ep30000001yem-att/el201223\_1.pdf

이상